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08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21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.10.14. 김용석 의원(찬성자 고병국 의원 외 9명)

나. 회부일자 : 2020.10.26.

다. 상정 일자 : 제298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

- 2020년 12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-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,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4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의회 표결방법과 관련해 기립·거수투표가 어려운 의원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투표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회의 표결방법의 용이성 제고(안 제43조제1항)

- 지방의회 회의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「지방자치법」 제7절 ‘회의’는 표결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, 동법 제71조(회의규칙)¹⁾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의회가 회의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.
-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43조제1항은 “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나, 기립표결 시 일부 장애 의원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의원의 경우 기립투표가 불가능하거나 큰 어려움이 있어 투표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.
- 이에 본 개정안은 기립투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의원들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의원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의원의 투표 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회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됨.

1) 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3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<u>기립표결</u>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3조(표결방법) ① _____ _____. _____ _____</p> <p>— <u>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</u>—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- 참고로, 국회법과 여타 16개 시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및 기립·거수표결 외의 다른 표결 방법을 규정한 사례가 없으며(붙임 참조),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최초로 장애 의원 등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회 표결방법과 관련해 기립·거수투표가 어려운 의원의 경우 본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투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 투표 참여의 용이성, 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)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0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김용석, 고병국, 문영민,
김상훈, 김평남, 김상진,
신정호, 김제리, 김태호,
이현찬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,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 4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단서 중 “기립표결”을 “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3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<u>기립표결</u>로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43조(표결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</u>-----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